

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학업 보장 안내

1. 관련 규정

「예비군법」 제10조의2 (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)

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.

「예비군법」 제15조의2 (과태료)

①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교직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17조의3 (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조치)

학교의 장은 「예비군법」 제10조의2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의 학업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.

- ① 해당 동원 또는 훈련 기간 동안의 수업에 있어서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을 것
- ② 해당 동원 또는 훈련 기간 동안의 수업과 관련된 자료 제공 또는 수업 보충을 실시할 것
- ③ 그 밖에 해당 동원 또는 훈련을 이유로 성적 처리 등 학업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을 것

「학칙」 제35조의2 (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)

- ① 담당 교·강사는 「예비군법」 제6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훈련 기간 동안 출결, 성적처리 및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.
- ② 담당 교·강사는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수업 보충 등 학생 학습권을 보장한다.

「학사에 관한 규정」 제3조의3 (예비군 훈련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)

담당 교·강사는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훈련 기간 동안 출결, 성적처리 및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으며,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수업 보충 등 학생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.

2.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학업 보장 안내

- 가.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수업 담당교수는 증빙서류가 있을 시 공결신청을 통해 해당 기간 출석으로 인정해야 합니다.
- 나.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담당교수는 수업 보충(학습자료 제공, 녹화 교육영상) 등 학습권을 보장해야 합니다.